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 결 사 항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10. 6.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3. 10. 6.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안이유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의 전문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2021. 10. 26. 의안번호 제2361호에 의거 원안 가결된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위탁근거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다.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

3. 민간위탁 필요성

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한 전문적인 시설 운영 필요
나. 각종 후원 및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지역 장애인에 대한 수혜 범위 확대

4. 위탁내용

가. 위탁운영기간: 2022. 1. ~ 2026. 12. (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위탁대상: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시 설 명	소 재 지	종 사 자	규 모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195 2층 (고성반다비체육문화센터)	7명	- 1층: 수중재활실, 까페담다(장애인 직업재활) - 2층: 사무실 1, 언어재활실 1, 인지학습실 1, 특수체육실 1

다. 위탁방법 및 그간 추진사항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선정: 2021. 12. 21.

- 사회복지법인 천주교마산교구 사회복지회(대표자 최봉원) 선정

○ 위탁계약 체결: 2021. 12. 23.

○ 위탁운영: 2022. 1. 1. ~ 현재 (센터장 김도현)

라. 위탁사무내용: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전반

마. 연도별 예산 편성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 재원별	2022년 (A)	2023년	2024년 (B) (편성 요구액)	증감액 (C)	비고
합 계	**309,903**	323,375	**381,215**	**71,312**	
도 비	60,000	60,000	42,000	△18,000	
군 비	249,903	263,375	339,215	89,312	

○ 2021년 군의회 동의 후 편성한 2022년 당초예산액 대비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요구액이 **20% 이상 증액**

○ 증액 사유: **인건비 증가**

- **종사자 인건비 인상**: 매년 4% 정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산출내역: 연 14,000천 원 × 2년 = **28,000천 원 정도**

- **인력 충원**: **2023. 7. 언어재활사 1명 채용**(3급 7호봉)

・산출내역: 기본급 29,500천 원 + 제수당 13,812천 원= **43,312천 원 정도**

5. 참고사항

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붙임 1

나. 언어재활프로그램 운영 현황: 붙임 2

다. 관계법령: 붙임 3

붙임 1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
>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
>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
> [시행일 : 2019. 12. 12.] 제3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별표 3. 2023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단위: 원/월)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2,092,900	2,074,400	2,061,300	2,042,900
2호봉	2,146,000	2,123,000	2,103,300	2,091,800
3호봉	2,193,400	2,167,900	2,149,600	2,127,100
4호봉	2,250,800	2,226,500	2,212,900	2,178,500
5호봉	2,317,300	2,291,400	2,273,000	2,232,000
6호봉	2,418,100	2,373,400	2,349,600	2,296,400
7호봉	2,539,100	2,467,400	2,429,700	2,385,400
8호봉	2,665,200	2,549,900	2,516,300	2,472,700
9호봉	2,775,700	2,628,100	2,594,300	2,546,200
10호봉	2,870,100	2,709,400	2,660,500	2,627,400
11호봉	2,951,400	2,774,800	2,723,700	2,690,600
12호봉	3,028,500	2,856,500	2,802,700	2,754,000
13호봉	3,091,100	2,936,900	2,849,800	2,803,800
14호봉	3,150,300	3,002,700	2,917,300	2,848,200
15호봉	3,201,700	3,062,000	2,970,500	2,902,400
16호봉	3,264,300	3,117,000	3,016,300	2,952,600
17호봉	3,319,000	3,170,400	3,066,500	3,000,700
18호봉	3,369,400	3,223,000	3,123,700	3,057,700
19호봉	3,424,100	3,280,100	3,173,600	3,113,700
20호봉	3,475,500	3,335,300	3,227,700	3,170,200
21호봉	3,530,400	3,386,500	3,281,200	3,220,400
22호봉	3,582,900	3,431,000	3,333,300	3,266,000
23호봉	3,638,900	3,484,600	3,381,600	3,318,300
24호봉	3,690,300	3,537,100	3,429,900	3,362,700
25호봉	3,739,600	3,586,500	3,481,300	3,409,300
26호봉	3,787,700	3,632,300	3,529,400	3,450,900
27호봉	3,839,000	3,670,300	3,577,700	3,484,500
28호봉	3,880,300	3,707,100	3,617,900	3,507,800
29호봉	3,925,300	3,721,300	3,637,400	3,526,700
30호봉	3,963,900	3,752,000	3,660,500	3,545,800
31호봉	4,008,700	3,784,900	3,689,400	3,567,300

별표 2. 2023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단위: 원/월)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2,159,900	2,106,100	2,067,900	2,050,200
2호봉	2,204,200	2,141,000	2,114,400	2,097,500
3호봉	2,260,900	2,187,600	2,161,000	2,137,200
4호봉	2,316,000	2,242,900	2,205,400	2,177,400
5호봉	2,371,200	2,310,200	2,248,900	2,220,200
6호봉	2,467,700	2,384,800	2,315,900	2,269,500
7호봉	2,583,600	2,491,200	2,397,300	2,327,500
8호봉	2,696,200	2,577,100	2,484,400	2,399,700
9호봉	2,821,900	2,659,900	2,562,300	2,483,700
10호봉	2,943,700	2,747,000	2,648,000	2,561,900
11호봉	3,049,500	2,837,600	2,735,600	2,643,300
12호봉	3,135,800	2,918,000	2,820,500	2,723,600
13호봉	3,198,300	2,991,700	2,893,900	2,801,800
14호봉	3,255,300	3,063,100	2,963,700	2,850,900
15호봉	3,306,700	3,118,900	3,015,000	2,907,800
16호봉	3,357,000	3,174,800	3,067,900	2,959,200
17호봉	3,414,000	3,228,500	3,117,000	3,006,200
18호봉	3,468,900	3,284,400	3,166,300	3,076,000
19호봉	3,526,900	3,337,900	3,219,800	3,135,300
20호봉	3,579,500	3,391,600	3,272,400	3,196,100
21호봉	3,634,400	3,446,400	3,323,700	3,250,100
22호봉	3,688,100	3,504,400	3,378,400	3,273,600
23호봉	3,740,500	3,552,800	3,432,000	3,327,800
24호봉	3,792,000	3,605,300	3,483,600	3,379,800
25호봉	3,842,500	3,653,500	3,535,000	3,423,300
26호봉	3,893,800	3,699,300	3,583,200	3,450,900
27호봉	3,927,700	3,740,700	3,628,900	3,489,800
28호봉	3,964,300	3,767,800	3,666,800	3,524,900
29호봉	3,998,600	3,781,900	3,685,200	3,535,100
30호봉	4,037,400	3,806,300	3,709,300	3,557,500

붙임 2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언어재활프로그램 운영 현황**

❑ 시설 현황

시 설 명	설립연도	소재지	대표자	종사자	이용인원	비고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2016. 12. 7.	고성읍 송학고분로 195, 2층	김도현	7명	35명 (일평균) 4,900명 (연평균)	

❑ 언어재활사 채용 현황

(단위: 천원)

이 름	생년월일	채용일자	직 급	인건비	담당업무	비고
한주운	1982. 3. 30.	2023. 7. 1.	3급 (7호봉)	43,312	언어발달 검사 언어재활 및 상담	

❑ 언어재활 프로그램

○ 대 상: 언어발달이 지연되거나 언어적 문제가 있는 장애 · 비장애 아동 및 청소년

○ 내 용: 수용 및 표현 언어, 조음음운, 의사소통 기능 향상 등 언어재활프로그램 운영

○ 기 간: 주 1 ~ 2회(이용기간 최대 2년)

○ 이용료: 1회기 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차상위계층 50% 감면)**

❑ 추진실적

○ 상담현황: 58건

○ 이용인원: 14명(월 인원 55명)

○ 장애여부: 장애 5명, 비장애 9명

○ 성별현황: 남 11명, 여 3명

○ 연 령 별

구 분	0세 ~ 7세	8세 ~ 13세	14세 ~ 18세	18세 이상	비고
14명	10명	2명	1명	1명	대기자 2명

❑ 홍보 및 기대효과

○ 관내 어린이집 · 학교에 언어재활프로그램 홍보 공문 발송 및 센터 홈페이지 게시

○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 언어장애의 원인을 평가 및 진단하여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성 발달 제고

❑ 관련 사진

사진설명	언어재활프로그램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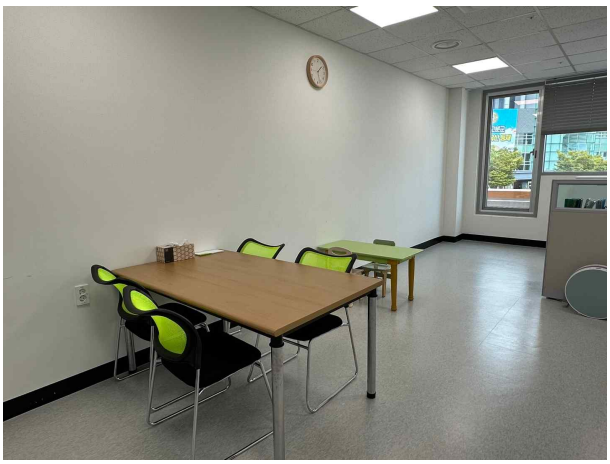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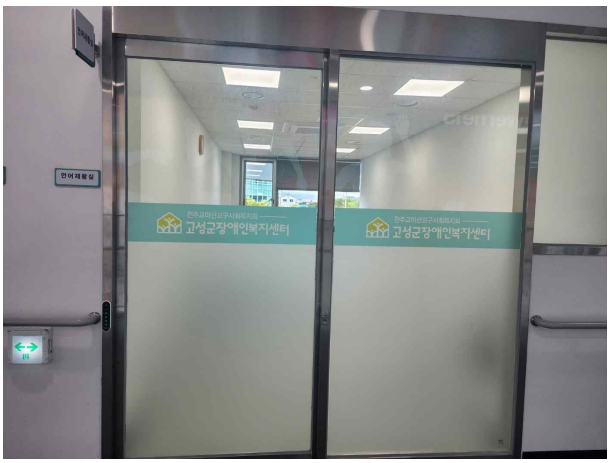

사진설명	언어재활프로그램실 내부	언어재활프로그램실 외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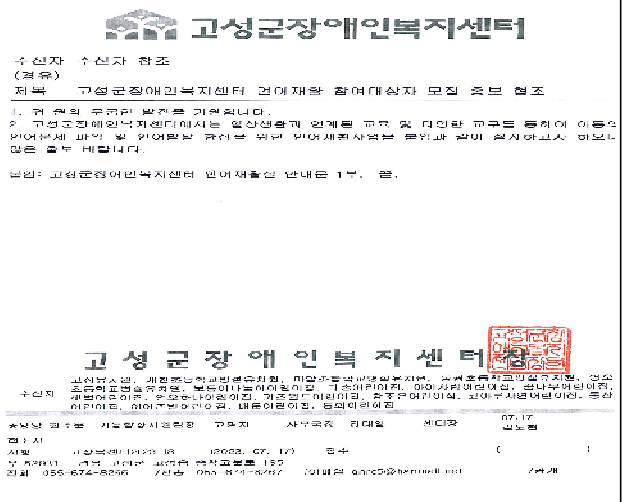

사진설명	홍보 공문 및 홍보 전단

참고 **관계법령(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위탁) ① 장애인복지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한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제6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중요내용(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예산의 20퍼센트 이상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과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